

춘천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37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조

변 론 종 결 2020. 8. 18.

판 결 선 고 2020.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피고가 주지로 있는 강원 홍천군 소재 C사에서 2012년경부터 2017. 10.경까지 거주했는데, 거주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치매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D)에서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4,140,000원, 국민은행 계좌(E)에서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034,000원, 신한은행 계좌(F)에서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8,910,000원을 원고 허락 없이 인출하여 부당이득 하고, 원고가 G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자녀 H의 소유 토지에서 받아오던 토지임대료 합계 7,000,000원(=140만 원 × 5년)을 편취하여 부당이득 하였다면서 위 각 돈의 합계액 59,0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사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부탁으로 농협통장 및 국민은행 통장의 일부 출금행위에는 관여하였지만 신한은행 계좌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을 찾도록 맡긴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관여된 출금행위의 경우 원고의 진료비나 생활비, 교통비, 법회비용 등으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출금, 이체되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예금을 원고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고, 토지임대료 수금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원고의 토지임대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네받아 부당이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원고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죄 등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한데,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 및 C사 총무 I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7. 10. 10.까지 원고의 농협통장에서 임의로 59,84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원고가 C사에 기거하였고, 병원통원 치료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원고의 계좌에서 C사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날은 법회 또는 재일로 위 돈은 기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② 원고가 피고 및 I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합계 9,603,440원 상당의 인출 및 체크카드 결제를 통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각 인출내역 이외에 그 돈이 원고가 사용한 돈인지 피고나 I이 사용한 돈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고소 내용을 보강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처분이 내려진 사실, ㉓ 원고가 피고 및 I에 대하여 ㉔ 2014. 6. 30.부터 2017. 10. 10.경까지 (치매 진단을 받았던) 원고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체, 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64,140,000원을 편취하고, ㉕ 2012. 8. 16.부터 2016. 10. 26.경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결제, 출금하는 방법으로 9,077,000원을 편취하고, ㉖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농지임대료 받은 돈 7,00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준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원고가 약 6년간 C사에서 무상 거주하였고, 이체 내역이 이름이 특정된 부분은 병원비, 흑염소 탕 값 등 사용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

별지